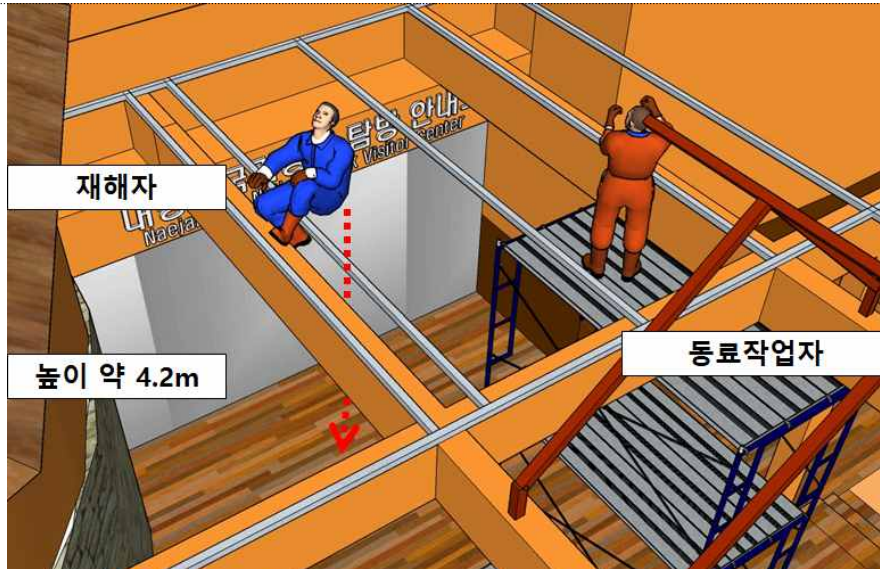




재해 개요

- 2021.08.10.(화) 11:40경 전라북도 정읍시 소재 OOOO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주출입구 상부에서 영상실 외측 상단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 각관을 해체 후 이동 중 캐노피 보 상부에서 약 4.2m 아래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이송·치료 중 당일 사망한 재해임.



재해 발생 원인

- 추락 방지조치 미실시
 -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임에도 폭 약 20cm의 캐노피 보 위에서 이동 및 작업을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작업 할 수 있는 작업발판을 미설치하였으며,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함
 - 또한,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나 해당 조치를 미실시함
- 개인 보호구 미착용
 - 해당 작업구간의 높이는 약 4.2m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거나 이동하였으나, 재해자는 안전모와 안전대 등을 착용하지 않음



재해 예방 대책

- 추락 방지조치 실시
 -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,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함.
 - 다만,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,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함.
-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감독
 -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거나 작업자 이동시에, 근로자에게 안전모,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함.

본 사례는 공공기관 발주공사, 직영, 도급 등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배포하고 있습니다.